

No. 8472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greement on fisheries (with annex, exchanges of notes, exchange of letters, agreed minutes and record of discussions). Signed at Tokyo, on 22 June 1965

Official texts: Japanese and Korean.

Registered by Japan on 15 December 1966.

**JAPON
et
RÉPUBLIQUE DE CORÉE**

Accord concernant la pêche (avec annexe, échanges de notes, échange de lettres, procès-verbaux approuvés et compte rendu des discussions). Signé à Tokyo, le 22 juin 1965

Textes officiels japonais et coréen.

Enregistré par le Japon le 15 décembre 1966.

EXCHANGE OF NOTES CONCERN-
ING THE STRAIGHT BASELINES
IN CONNECTION WITH THE ES-
TABLISHMENT OF THE FISHERY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ÉCHANGE DE NOTES RELATIF AU
TRACÉ DES LIGNES DROITES À
PARTIR DESQUELLES DOIT
ÊTRE DÉLIMITÉE LA ZONE DE
PÊCH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

[KOREAN TEXT — TEXTE CORÉEN]

1965년 6월 22일

토오코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여, 대한 민국 정부가 대한 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의 직선 기선을 결정할 의향임을 언명
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1) 장기갑 및 단만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 (2) 화압주 및 범월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 (3) 1.5미터압, 생도, 홍도, 간여압, 상백도 및 거문도의
각각의 남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 (4) 소명도, 서귀열비도, 어청도, 직도, 상항등도 및 횡도
(안마군도)의 각각의 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EXCHANGE OF NOTES CONCERN-
ING THE FISHERY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ÉCHANGE DE NOTES CONCER-
NANT LA ZONE DE PÊCH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

[KOREAN TEXT — TEXTE CORÉEN]

1965년 6월 22일

토오로오에서

각각.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 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장을 가집니다.

잡정적 조치로서, 대한 민국이 설정하는 어업에 관한 수역을 구획 하는 선과 다음 각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이는 수역이 당분간 대한 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된다.

- (1) 북위 33도 48분 15초와 동경 127도 21분의 고점, 북위 33도 47분 30초와 동경 127도 13분의 고점 및 우도의 진동 12해미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 (2) 북위 33도 56분 25초와 동경 125도 55분 30초의 고점과 북위 33도 24분 20초와 동경 125도 56분 20초의 고점을 연결하는 직선

EXCHANGE OF NOTES CONCERN- ÉCHANGE DE NOTES RELATIF
ING IDENTIFICATION MARK- AUX MARQUES DISTINCTIVES
INGS

I

[JAPANESE TEXT — TEXTE JAPONAIS]

(漁業協定附属書に定める標識に関する交換公文)

(日本側書簡)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の附属書に定める標識の様式及び附着場所につき、両国政府の代表者の間で次のとおりの了解に到達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1 標識には、漁船の国籍を示す略字並びに漁業の種類及び根拠地港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番号を付するものとし、その様式は、別紙のとおりとする。

2 標識には、夜間において前記の略字及び番号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塗料を塗付するものとする。

3 すべての標識には、おのの政府の発給証印を付するものとする。

4 標識の附着場所は、船橋の両側の上辺の見やすいところとする。

前記の了解を大韓民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受領したときは、日本国政府は、この書簡及び閣下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

EXCHANGE OF NOTES CONCERN-
ING CO-OPERATION ON FISH-
ERIESÉCHANGE DE NOTES RELATIF À
LA COOPÉRATION DANS LES
PÊCHERIES

I

[KOREAN TEXT — TEXTE CORÉEN]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각,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 양해를 확인하는 영장을
거칩니다.

양국 정부는 양국 어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협력한다.

이 협력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 (2) 어업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